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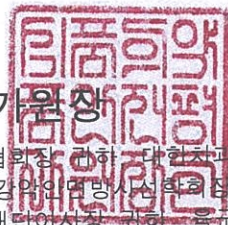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알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위임사항 중 ‘검사측정기관의 등록·관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2013년 1월 22일자로 전부 개정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기관소개 → 법령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수신자 대한영상의학회장 귀하,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진료의사협회장 귀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귀하,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장 귀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 귀하, 대한개원의협의회 귀하,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사장 귀하, 육군 제2879부대장 귀하, 한국의료기기기술원장 귀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장 귀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귀하, 한국동위원소협회 귀하,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장 귀하, (주)한국의료기기연구원장 귀하, (주)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장 귀하, (주)중앙기술검사원장 귀하, 케이엔디티앤아이(주) 대표 귀하, 서울방사선서비스(주) 대표 귀하, 한일원자력(주) 대표 귀하,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대표 귀하, (주)라드인 대표 귀하

주무관 이정은 방사선안전과 전결 2013. 1. 22.
장 김형수

협조자

시행 방사선안전과-347 (2013. 1. 22.) 접수

우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 / <http://nifds.go.kr>

전화번호 043-719-5004 팩스번호 043-719-5000 / kdrlee@korea.kr / 대국민 공개